

의안 번호	890
----------	-----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2. 3. 5.(월)
- 제출자 : 정현희 의원 외 2명
- 위원회회부 : 2012. 3. 12.(월)
- 위원회심사 : 2012. 3. 19.(월)

## 2. 개정이유

- 2012. 1.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·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-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
  - ▶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(안 제13조의2제1호)
  - ▶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(안 제13조의2 제2호)
  - ▶ 단,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.

## 4. 근거법령

-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
-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7조의2 (미공포)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률개정 경과보고를 드리면

- ▶ 2012. 1.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· 공포되었음.
- ▶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주요내용은  
구청장은 대규모점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,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.
- ▶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매장면적이 3,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복합쇼핑몰,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 6종류가 있음.
- ▶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중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▶ 지난 2월7일부터 2월27일까지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에서는 대규모점포 6종류 중 적용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음.
- ▶ 지식경제부에 문의결과 3월 말경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임

○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제 실시는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,

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개정준비를 하고 있음.

○ 또한 본 건 개정조례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남구와 북구는 입법예고를 하였음.

○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

○ 또한 대규모점포를 이용하는 구민 그리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, 직접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업주, 대규모점포등에서 취업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종업원 등 민감하고 첨예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.

## 관 련 법 령

### ▣ 유통산업발전법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
2. 의무휴업일 지정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

제7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“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별표1 제1호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

## ▣ 대규모점포등 현황(중구)

(단위 : ㎡ / 개)

구분	시 장 명	소 재 지	대 표	개 설 등록일	대지 면적	연건축 면 적	영업장 면적	점포수
대규모 점포	삼성홈플러스 울산점	북산동 100 T.290-8101	이승한, 설도원	01.11.06	18,429	52,304	10,674	90
“	뉴코아아울렛 울산성남점	성남동 249-1 T. 210-5004	윤 여 영 【(주)이랜드리테일】	06.08.17	1,923	10,614	7,178	128
“	디앤아이	성남동 256-24 T. 210-7002	이 석 구 【(주)디앤아이】	05.10.14	1,742	21,944	9,294	6
“	(주)이마트 학성점	학성동 349-15 T. 701-1052	최 병 렬 【(주)신세계마트】	01.09.08	8,017	42,191	11,618	23
“	센트럴프라자 (구.중앙시장)	옥교동 120-2 T. 241-5000	곽 대 언 (대표이사) 【(주)센트럴프라자】	03.01.13 (10.4.28)	3,740	16,663	9,559	775
준대규 모점포	GS리테일 태화점	태화동 37-10	허승조 (주)지에스리테일	2011.7.25			2790	



### -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제 지정 관련 - 권역별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계획

일 시	권 역	해 당 동	장 소	참석대상	비 고
2012.3.26(월) 11:00	동부	병영1, 2동 약사동	병영1동 주민센터	통정회임원 (회장, 부회장, 총무, 감사)	
2012.3.28(수) 11:00	중부	학성동 반구1, 2동 북산1, 2동 북정동	북산1동 주민센터	”	
2012.3.30(금) 11:00	서부	중양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	태화동 주민센터	”	